

보도 일시	2022.2.21.(월) 조간 2022.2.20.(일) 11:00	배포 일시	2022. 2. 18.(금) 14:00
담당 부서	해운물류국 연안해운과	책임자	과 장 변혜중 (044-200-5730)
		담당자	사무관 백정호 (044-200-5735)

바닷길로 온실가스 줄일 기업들 모여라

- 2022년 연안해운 부문 전환교통 지원사업자 모집(2.21.~3.11.)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월 21(월)부터 3월 11일(금)까지 보름 간 2022년도 연안해운 부문 전환교통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연안해운 부문 전환교통 지원사업’은 물류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도로 수송보다 탄소배출량이 적은* 해상 수송방식으로 전환하는 사업자에게 탄소저감 등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 온실가스 배출량 : 도로 대비 약 1/3 (도로 266, 해운 90 CO₂톤/백만톤·km)

해양수산부는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따라 2010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21년까지 총 2,577만 톤의 화물을 도로에서 해상수송으로 전환하여 총 383만 톤의 이산화탄소(CO₂)를 감축했다.

‘연안해운 부문 전환교통 지원사업’에는 연안해운으로 운송화물을 전환하려는 선사, 화주 등 교통물류 운영자와 교통물류이용자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선사와 화주 공동으로 지원할 수도 있다. 지원업체는 2월 21(월)부터 3월 11일(금)까지의 기간 중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02-6096-2033)으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사업 수행 능력, 기대효과, 계획의 타당성 등을 평가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전환물량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업내용과 신청방법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공지

사항 게시판과 한국해운조합 누리집(www.theksa.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변혜중 과장은 “연안운송은 도로운송에 비해 탄소를 적게 배출하고, 도로 혼잡 등 사회환경적인 비용도 낮다. 많은 사업자들이 이러한 장점들을 보유한 연안운송으로 전환하도록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연안운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1

전환교통 사업개요

□ (목적) 기존에 도로로 운송하던 화물을 연안해운으로 운송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여 물류의 친환경화 유도

□ (근거)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

* 전환교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물류운영자 및 교통물류이용자, 화주 등과 전환교통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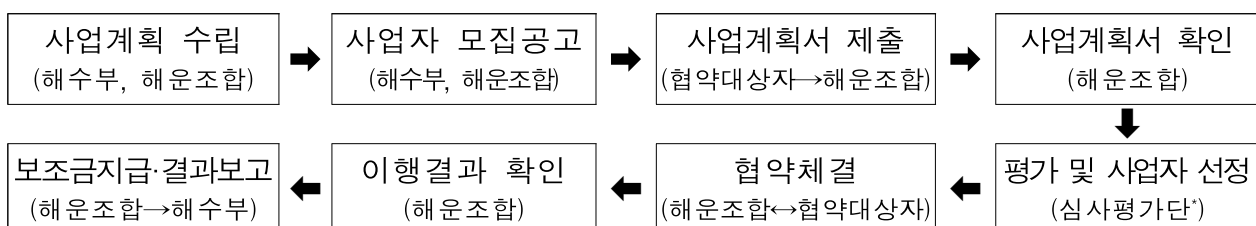
□ (신청자격) 교통물류운영자(내항화물선사), 교통물류이용자(화주 등)

□ (사업기간/예산) 2010년~계속 / 2,700백만원('22년)

□ (사업내용) 도로운송에서 연안운송으로의 전환 또는 신규로 연안운송한 협약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임차액(해송-육송)과 사회환경적 비용 절감액*(30%한도) 중 적은금액을 보조금으로 지급

* 대기오염·온실가스·소음·교통혼잡 등 물류산업에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환경적 요인을 비용으로 수치화 한 금액으로써 1톤의 화물을 도로에서 연안운송으로 수송수단을 전환하여 1km 운송하는 경우 55.36원 절감 가능

□ 사업추진 절차



* 해양수산부, 해운조합, 해운관련 연구기관 및 전문가 등 총 6명으로 구성

참고 2 관련 사진

☐ 과거 협약 체결 사진



☐ 화물 운송 관련 사진

